

'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의안 번호	10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5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'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제155회 ('98. 12. 16) 임시회의에서 변경 확정된 바 있으나
- 주요사업의 추가 시행으로 재산의 교환사유가 발생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골자 (국·공유재산의 상호교환)

[재산의 처분]

- 구·공무원교육원부지 처분 -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49-3
- 규 모 : 대지 4,705㎡ 건물 4,243.42(24개동) 수목(1,092주)
- 시 기 : '99 상반기
- 감정가액 : 2,131,415 천원 (대지 1,270,350 건물 778,065 수목 83,000)

[재산의 취득 및 처분]

-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일부 -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-4
- 규 모 : 13,294㎡ (체육용지)
- 시 기 : '99 상반기
- 감정가액 : 3,722,320 천원

[재산의 취득]

- 독립옥천전문대학 부지 일부 -

- 위 치 :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-1
- 규 모 : 9,793.2㎡ (학교용지)
- 시 기 : '99 상반기
- 감정가액 : 1,958,640 천원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

4. '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(안) 「 별첨 」

5. 관계법령 발췌 : 「 별첨 」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(안)

199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	당 초			변 경 (추 가)			합 계			
		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
취득	계	토지	1	508,436	390,000	2	23,087	5,680,960	3	531,523	6,070,960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매입	토지	1	508,436	390,000				1	508,436	390,000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특	교환특취득	토지				2	23,087	5,680,960	2	23,087	5,680,960
			건물									
			기타									
기타특취득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				2	17,999	4,992,670	2	17,999	4,992,670	
		건물				1	4,243.42	778,065	1	4,243.42	778,065	
		수목				1	1,092	83,000	1	1,092	83,000	
	매각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양여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교환처분	토지				2	17,999	4,992,670	2	17,999	4,992,670	
		건물				1	4,243.42	778,065	1	4,243.42	778,065	
		수목				1	1,092	83,000	1	1,092	83,000	
사용 및 대부허가	토지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

1999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(7-3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	추정가액	교 환 시 기	교 환 사 유	교 환 대 상 자	비 고
	구분	지목	소 재 지	교환수량					
계	취득	토지 건물	2 건	23,087.2	5,680,960				
	처분	토지 건물 수목	2 건 1 건 (1,092주)	17,999 4,243	4,992,670 778,065 83,000				
1	취득	학교 용지	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-1	9,793.2	1,958,640	년 중	옥천전문대학 부지 확보	충청북도교육감	도립옥천 전문대학
2	취득	체육 용지	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-4	13,294	3,722,320		충청북도교육청 (옥천전문대부 지)과 교환	청주시장	충북체고
1	처분	대지	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49-3	4,705	1,270,350	년 중	청주시(충북체 육고 부지)와 교환	청주시장	구·공무 원교육원
		건물	(24동)	4,243. ⁴²	778,065				
		수목	(1,092주)		83,000				
2	처분	체육 용지	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-4	13,294	3,722,320			충청북도교육감	충북체고

※ 면적은 실제 교환시(감정평가 결과)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

관 계 법 령 발 취

[지방재정법 및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	<p>제101조(교환)①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.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.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.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3미만 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2분의1미만 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교환의 상대방이 국가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인 경우</p>

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및동시행규칙]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 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.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 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5. 교환계약서(별지 19호서식)</p>